

법원의 공보

2025. 02. 15.
제 1706 호



법원행정처

목차

• 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15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227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232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234
	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		236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238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240
• 내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243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245
• 예규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247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250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260
• 신법령 목록			262
• 인사			272

규칙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90호 2025. 1. 23. 공포)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법관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 2.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 3.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제10조의2제2항제1호가목 후단 중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을 “2개월째까지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2개월째”를 “12개월째(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후단 중 “25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2개월째”를 “12개월째(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대신하여”를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로, “근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외 부분 단서 중 “근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p>매주 최초 10시간 단축 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p>	=	<p>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 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 액(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p>	×	<p style="text-align: center;">10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 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p> <hr style="width: 80%; margin: 0 auto;"/> <p style="text-align: center;">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p>
---	---	---	---	---

<p>나머지 근무시간 단축 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p>	<p>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 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 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 로 한다)</p>	<p>×</p> <p>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육아기 근무시 간 단축 법관 주당 근무시간 - 10(주당 단 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p> <hr/> <p>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p>
---	---	--

제10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에서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별표 1, 별표 5,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주당 근무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부터 적용한다.

제5조(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제6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서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법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은 이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대상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18개월에서 해당 법관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

대상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육아휴직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법관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재판수당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4호의 재판수당 가산금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4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1.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급액
2년 미만	월 봉급액의 10% 해당금액
5년 미만	월 봉급액의 20% 해당금액
6년 미만	월 봉급액의 25% 해당금액
7년 미만	월 봉급액의 30% 해당금액
8년 미만	월 봉급액의 35% 해당금액
9년 미만	월 봉급액의 40% 해당금액
10년 미만	월 봉급액의 45% 해당금액
10년 이상	월 봉급액의 50% 해당금액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월지급액	비고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년 미만	30,000원	

비고: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해당 법관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별표 5]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

부양가족		월지급액	비고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	첫째자녀	50,000원	
	둘째자녀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20,000원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1. 기술정보수당	1) 일반직공무원 중 사법행정직군의 전산직렬과 기술심리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직렬의 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6급·7급: 월 30,000원 이하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가) 기술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기술직군 중 관리직렬에 속하는 6급 및 7급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8급 및 9급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전산업무(천·검공 및 자료입력 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3년 미만 1년 이상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2. 연구업무수당	1)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교수를 제외한다)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5급 이상: 월 6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40,000원 이하
	2) 사법연수원의 원장, 부원장, 교수 및 국장과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원장, 국장, 교수 및 전임강사		월 110,000원
	3) 연구직공무원		월 80,000원
3. 합숙생활지도수당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정규근무 시간 외에 피교육자의 합숙생활지도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1일밤: 5,000원

구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4. 재판수당	재판 및 재판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법관		대법원장·대법관·법조경력 30년 이상인 법관: 월 400,000원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관: 월 250,000원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관: 월 200,000원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법관: 월 100,000원 (법조경력이란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 중 판사임용 시 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과 제4항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가산금> 동일한 사무분담에 2년차 이상 보임하는 법관(재판장의 경우 3년차 이상 보임을 원칙으로 한다)에게는 직무의 내용·곤란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판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요건, 지급액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5. 민원업무수당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거나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월 50,000원 이하 <가산금> 민원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 범위에서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재판업무수당	1) 기술심리관과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재판 및 동지원업무에 종사하는 5급~9급 공무원(다만, 2013. 12. 12.자로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직렬의 공무원은 제외)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기술심리관 : 월 80,000원 이하 5~9급 공무원 : 월 70,000원 이하 <가산금> 형사재판부에서 재판참여, 참여보조업무를 담당하는 5~9급 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속기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3)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원		월 80,000원
	4) 사법보좌관		월 80,000원

구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7. 의료업무수당	간호사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월 50,000원 이하																				
8. 사서수당	사서직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5급 이상 : 월 4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30,000원 이하																				
9. 등기업무수당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등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등기소장이나 과장이 아닌 5급, 6급 이하의 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월 70,000원 이하																				
10. 시간제 근무수당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금액																				
11. 전문직 위수당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근무기간</th> <th colspan="2">월 지급 상한액</th> </tr> <tr> <th>4급 이상</th> <th>5급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1년 미만</td> <td>100,000원</td> <td>70,000원</td> </tr> <tr> <td>1년이상 2년미만</td> <td>120,000원</td> <td>90,000원</td> </tr> <tr> <td>2년이상 3년미만</td> <td>180,000원</td> <td>150,000원</td> </tr> <tr> <td>3년이상 4년미만</td> <td>300,000원</td> <td>250,000원</td> </tr> <tr> <td>4년 이상</td> <td>450,000원</td> <td>400,000원</td> </tr> </tbody> </table> <p>(비고) 근무기간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p>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이상 2년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이상 3년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이상 4년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이상 2년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이상 3년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이상 4년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12. 중요 직무급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정원의 24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지급대상</th> <th>월 지급 상한액</th> </tr> </thead> <tbody> <tr> <td>3급(상당) 또는 4급(상당)공무원</td> <td>200,000원</td> </tr> <tr> <td>5급(상당)공무원</td> <td>150,000원</td> </tr> <tr> <td>6급(상당) 이하 공무원</td> <td>100,000원</td> </tr> </tbody> </table>	지급대상	월 지급 상한액	3급(상당) 또는 4급(상당)공무원	200,000원	5급(상당)공무원	150,000원	6급(상당) 이하 공무원	100,000원												
지급대상	월 지급 상한액																						
3급(상당) 또는 4급(상당)공무원	200,000원																						
5급(상당)공무원	150,000원																						
6급(상당) 이하 공무원	100,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제10조의2(육아휴직수당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법관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법관인 경우 해당 법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개정안

제10조의2(육아휴직수당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법관의 육아휴직수당은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② -----

-----.

1. -----

가. -----

-----, ----- 2개월째까지는 -----

-----.

현 행

나.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 1항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법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 1항에 따른 금액

다. 삭제

③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첫째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 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 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지급액보 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지급액으로 한다)은 매 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 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2. 둘째 이후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 한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

개 정 안

나. -----12개월째(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 월째)---: -----

2. -----

가. -----

----- 300만원
-----.

나. -----12개월째(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 월째)---: -----

<삭 제>

현 행

④ 육아휴직 대상 법관이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도록 지정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법관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p>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p>	$= \frac{\text{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 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10}$ <p>(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p> <p>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p>
<p>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p>	$= \frac{\text{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 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text{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주당 근무시간} - 10}$ <p>(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p> <p>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p>

개 정 안

④ -----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 근무시간 ----- 근무시간 -----

<p>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p>	$= \frac{\text{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 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10}$ <p>(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p> <p>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p>
<p>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p>	$= \frac{\text{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 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text{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주당 근무시간} - 10}$ <p>(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p> <p>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p>

현행

⑤(생략)

〈신설〉

⑥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소속 법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⑦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안

⑤(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에서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⑦ -----

-----제4항-----

-----.

⑧(현행 제7항과 같음)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91호 2025. 1. 23. 공포)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6조의2(항소이유서) ① 항소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
 2.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때
 3.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4. 그 밖에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
- ② 항소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피항소인에게 그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 ④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다.

제1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3(답변서)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7조의 제목“(항소기록 송부기간)”을“(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400조제3항에 따른 항소기록의 접수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7조의3 및 제1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3(항소심의 변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27조의4(항소심의 증거신청) ① 항소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일괄하여 증거

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증거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증거
2.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3.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26조의2(준비서면 등) ①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 취지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②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 정 안

제126조의2(항소이유서) ① 항소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
2.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때
3.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4. 그 밖에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

② 항소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피항소인에게 그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④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2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현행

개정안

<신설>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다.

제127조(항소기록 송부기간) ①·②(생략)

제126조의3(답변서)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127조(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①·②(현행과 같음)

③ 법 제400조제3항에 따른 항소기록의 접수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제127조의3(항소심의 변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127조의4(항소심의 증거신청) ① 항소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일괄하여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증거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1.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증거

현 행

개 정 안

- 2.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 3.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대법원규칙 제3192호 2025. 1. 23. 공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기능)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설치하고, 법 제5조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4급 이상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4조(해촉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7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93호 2025. 1. 23. 공포)

법관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중 “법 제43조제1항제7호” 를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7호” 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를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판사 중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판사(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6조의3(결격사유) 법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 ①·②(생략)
- ③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고등법원 부의 재판장이 될 수 있다.

개 정 안

제6조의3(결격사유)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7호-----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등)

- ①·②(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판사 중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판사(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서 제1항의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이후 3년 이상 근무한 판사-----

◎ 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94호 2025. 1. 23. 공포)

재판연구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400명”을 “48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2조(정원)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400명으로 한다.

개정안

제2조(정원) -----
---- 480명-----.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95호 2025. 1. 23.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제32조제8항 단서 중 “둘째 자녀부터”를 “대상 자녀별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휴직기간
2. 이 규칙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근무기간

◎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196호 2025. 1. 23. 공포)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강등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은 경력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 공무원규칙」 제32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제22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중 “둘째 자녀부터”를 “대상 자녀별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휴직기간
2. 이 규칙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이 규칙 시행 전의 근무기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2조(경력기간의 계산) ① 휴직 ·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강등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은 경력 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 · 제5호 · 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

개 정 안

제22조(경력기간의 계산) ① 휴직 ·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강등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은 경력 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32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현 행

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② 시간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경력기간에 산입하되,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한다. (이하 계산식 생략)

③ (생략)

개 정 안

② -----

----- 대상 자녀별로 -----
----- (이하 계산식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내규

◎ 법관 및 법원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77호 2025. 1. 23.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근무상황카드

(부서: 직급: 성명:)

구분 신청일자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연락처 (전화번호)	결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종별이 지각·조퇴·외출인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함
3. 종별이 연가·지각·조퇴·외출 및 특별휴가(육아시간으로 한정)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가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78호 2025. 1. 31. 결재)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홈페이지”를 “홈페이지에 링크된 정보공개”로 한다.

제16조 중 “법원 홈페이지”를 “사법정보공개포털”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조의2(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생략)

② 각급기관의 정보 보유·관리부서의 장은 제 1항의 정보목록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매 월 10일까지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 받은 정보목록을 종합하여 그달 15일까지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은 지 방법원 지원은 본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전산시스템의 정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은 법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코너의 설치 등 정보공개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운영 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제2조의2(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생략)

② -----

홈페이지에 링크된 정보공개

제16조(전산시스템의 정비) -----

사법정보공개포털

■ 예규

◎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20호 2025. 1. 24. 결재)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호 양식, 제2-4호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0호 양식]

신분 확인서

공 탁 사 건	공탁 사건번호		공탁금액	
	공탁자		피공탁자	
신 청 사 항	신청인 성명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분확인 사유			
	<input type="checkbox"/>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 지급청구 <input type="checkbox"/> 장기미제 공탁사건 공탁금 지급청구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공탁통지서 교부청구 <input type="checkbox"/> 대리인의 공탁통지서 교부청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고(식별정보 등)		운전면허번호: 식별번호: 발급일자(발급기관): 년 월 일()		
신분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주민등록법 제24조의2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에 해당하므로 신분증 사본에 갈음하여 이 신분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 신분증명서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아래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운전면허번호(예:11-23-012345-67), 식별번호(예: 1234AB)
2.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 발급일자, 발급기관

[제2-4호 양식]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자	성명 (상호, 명칭)			피공탁자	성명 (상호, 명칭)		
	주소 (본점, 주사무소)				주소 (본점, 주사무소)		
공탁금액		한글 숫자		보관은행		은행지점	
형사사건	사건번호	경찰서	년제 호	지방법원	지청	년 형제 호	년 고단(합) 제 호
	사건명						
공탁원인 사실							
반대급부 내용 등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대리인 주소			
공탁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p>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별지] 안내문의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에 출석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p> <p>2.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p> <p>3. 공탁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탁자는 ①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②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p> <p>4.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소멸시효 중단 등)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p> <p>5.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때에 청구서에 이의유보 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 등)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p> <p>6. 공탁통지서는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p> <p>7. 사건 내용은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통지서 하단에 발급확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청된 사건이므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관련 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p>							
				년 월 일 발송			
				법원 지원 공탁관		(인)	
				(문의 전화:)	

◎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21호 2025. 2. 3.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법원조직법」 및 관련 대법원규칙에서 소속기관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이 예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⑥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16조에서 정한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이 예규 제3조 및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

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의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이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에서 정한 외부 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예규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의2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점검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① 신고·신청인 등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고 유형	<input type="checkbox"/>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확인·점검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② 확인·점검 내용			
③ 확인·점검 결과	<input type="checkbox"/> 특이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특이사항 있음 후속 조치 내용 :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서명 또는 인)

■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의2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임기 개시일)

본인은 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법원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의2 서식]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요청인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② 외부활동 유형	<input type="checkbox"/>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외부활동 내용	③ 외부활동 주제		
	④ 외부활동 방법		
	⑤ 외부활동 일시 20 ~ 20	⑥ 일괄신고 월 평균 횟수 : 회 연간 총 횟수 : 회	
	⑦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의3 서식]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외부활동 유형	<input type="checkbox"/>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결과	<input type="checkbox"/> 허가 <input type="checkbox"/>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법원장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 ②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
- ③ 법원장이 신청인인 경우 부기관장이 “법원장이 신청인이므로 부기관장 ○○ 서명 또는 인”하여 법원장에게 통보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 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 · 회피 신청을 한 법관과 법원 공무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 점검해야 한다.

개 정 안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 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 · 회피 신청을 한 법관과 법원 공무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 · 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법원조직법」 및 관련 대법원규칙에서 소속기관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현행

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따른 조치의 내용을 이 예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⑥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16조에서 정한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이 예규 제3조 및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②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개정안

②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의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 2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이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의2(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에서 정한 외부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예규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22호 2025. 2. 10. 결재)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4. 나. 중 “51.5%”를 각각 “51%”로 하고, 같은 나. 의 ○ 및 <참고: 조정지수 산정 방법> 중 “51.5%”를 각각 “51%”로, “0.7357...”을 각각 “0.7285...”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II. 지급기준

1. ~ 3. (생 략)

4. 지급등급과 지급률

가. (생 략)

나. 지급기준액의 조정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따른 것(첫 번째 성과상여금 51.5%, 두 번째 성과상여금 51.5%) 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전년도 월봉급액 기준, 이하 같다)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

※ (생 략)

* (생 략)

○ 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51.5% / 70% = 0.7357...

○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51.5% / 70% = 0.7357...

〈참고 : 조정지수 산정 방법〉

① (생 략)

②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 첫 번째 성과상여금

$$\text{표준평균지급률}(51.5\%) / \text{평균지급률}(70\%) = 0.7357...$$

□ 두 번째 성과상여금

$$\text{표준평균지급률}(51.5\%) / \text{평균지급률}(70\%) = 0.7357...$$

개 정 안

II. 지급기준

1. ~ 3. (현행과 같음)

4. 지급등급과 지급률

가. (현행과 같음)

나. 지급기준액의 조정

----- 51%, ----- 51%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51% / 70% = 0.7285...

○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51% / 70% = 0.7285...

〈참고 : 조정지수 산정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 첫 번째 성과상여금

$$\text{표준평균지급률}(51\%) / \text{평균지급률}(70\%) = 0.7285...$$

□ 두 번째 성과상여금

$$\text{표준평균지급률}(51\%) / \text{평균지급률}(70\%) = 0.7285...$$

신법령 목록 (2025. 1. 16. ~ 2025. 1. 31.)

법률

법률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20919	2025. 01. 21.	5
법률제20663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20664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8
법률제20665호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 별법	"	"	10
법률제20666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	"	13
법률제20667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20668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6
법률제20669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9
법률제20670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0
법률제20671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	23
법률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	"	33
법률제20673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46
법률제20674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47
법률제20675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	"	48
법률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 에 관한 기본법	"	"	49
법률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67

법률제2067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919	2025. 01. 21.	79
법률제20679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	80
법률제20680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	"	"	81
법률제20681호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	"	"	82
법률제2068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3
법률제20683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4
법률제2068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5
법률제20685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7
법률제2068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9
법률제20687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1
법률제20688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2
법률제2068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93
법률제20690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	"	95
법률제2069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6
법률제20692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98
법률제20693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9
법률제20694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00

법률제20695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20919	2025. 01. 21.	106
법률제2069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07
법률제20697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	"	109
법률제20698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	"	110
법률제20699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11
법률제20700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	"	112
법률제2070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14
법률제20702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15
법률제20703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16
법률제2070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17
법률제20705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20
법률제2070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22
법률제20707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24
법률제2070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	"	125
법률제20709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	126
법률제20710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	"	127
법률제2071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28
법률제20712호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	129

법률제20713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20919	2025. 01. 21.	132
법률제207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34
법률제20715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	141
법률제2071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	"	142
법률제20717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143
법률제207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44
법률제20719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	"	147
법률제20720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	"	148
법률제20721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149
법률제20722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923	2025. 01. 31.	6
법률제20723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20724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
법률제20725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20726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0
법률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	11
법률제20728호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25
법률제20729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7
법률제2073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28

법률제20731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923	2025. 01. 31.	30
법률제20732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1
법률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	"	32
법률제20734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34
법률제20735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	"	35
법률제20736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	"	36
법률제20737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38
법률제2073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0
법률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42
법률제2074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44
법률제20741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	"	49
법률제20742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1
법률제20743호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52
법률제20744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53
법률제20745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54
법률제20746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55
법률제2074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7
법률제20748호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58
법률제20749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59
법률제20750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60

법률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20923	2025. 01. 31.	64
법률제20752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3
법률제20753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	"	95
법률제20754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97
법률제20755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	"	105
법률제20756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	"	106
법률제20757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07
법률제2075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	"	108
법률제2075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	"	110
법률제2076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13
법률제20761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14
법률제20762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	"	116
법률제20763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117
법률제20764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19
법률제20765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	"	120
법률제20766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21
법률제20767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	"	123
법률제20768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24
법률제20769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	"	125
법률제20770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26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5210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20916 (별권1)	2025. 01. 16.	2
대통령령제35195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중 정정	20917	2025. 01. 17.	4
대통령령제3521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919	2025. 01. 21.	151
대통령령제35212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2
대통령령제3521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4
대통령령제35214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	"	157
대통령령제35215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176
대통령령제35216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78
대통령령제35217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5
대통령령제35218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7
대통령령제3521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9
대통령령제35220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2
대통령령제35221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4
대통령령제3522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 정령	"	"	196
대통령령제3522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8
대통령령제35224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	"	199
대통령령제35225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03
대통령령제35226호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10

대통령령제3522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919	2025. 01. 21.	219
대통령령제35228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	222
대통령령제35229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921	2025. 01. 23.	4
대통령령제35230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	"	11
대통령령제35231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20922	2025. 01. 24.	5
대통령령제35232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5233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7
대통령령제35234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17
대통령령제35235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923	2025. 01. 31.	127
대통령령제3523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	"	130
대통령령제35237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	"	131
대통령령제35238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2
대통령령제35239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4
대통령령제352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7
대통령령제35241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9
대통령령제35242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1

총리령

총리령제2009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	20916	2025. 01. 16.	3
총리령제2010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23	2025. 01. 31.	145

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95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16	2025. 01. 16.	4
국방부령제1168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17	2025. 01. 17.	5
국토교통부령제1440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
국토교통부령제1441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
국토교통부령제1442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
국토교통부령제14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9
산업통상자원부령제596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	"	"	39
해양수산부령제717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 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	"	55
농림축산식품부령제70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18	2025. 01. 20.	3
국토교통부령제1444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19	2025. 01. 21.	255
행정안전부령제54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21	2025. 01. 23.	23
농림축산식품부령제703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22	2025. 01. 24.	18
문화체육관광부령제579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
보건복지부령제1087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	"	56
해양수산부령제719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3
해양수산부령제720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	"	68
행정안전부령제545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5

환경부령제114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22	2025. 01. 24.	92
환경부령제115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8
환경부령제1151호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0
환경부령제1152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0
고용노동부령제433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923	2025. 01. 31.	146
국토교통부령제1445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	"	"	147
국토교통부령제1446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0
해양수산부령제2025-718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	"	"	152
행정안전부령제544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	"	153

인사

» 인사발령 법 제1호 | 2025. 1. 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	---------	----	------

1. 퇴 직

가. 지방법원장

대 법 원

정계선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5. 1. 1.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2호 | 2025. 1. 6.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	---------	----	------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희석

2025. 1. 20.부터 2025. 2. 1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 인사발령 법 제3호 | 2025. 1. 15.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	---------	----	------

1. 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영수

판사에 연임함

(2025. 1. 26.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4호 | 2025. 1. 16.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염원섭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정년퇴직)
나. 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정은조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정년퇴직)
(2025. 1. 31.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5호 | 2025. 1. 17.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성수	2025. 1. 22.부터 2025. 1.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사법연수원-미국 NJC 공동 주최 온라인 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조정민	2025. 1. 22.부터 2025. 1.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사법연수원-미국 NJC 공동 주최 온라인 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정은영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최보원	2025. 1. 22.부터 2025. 1.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사법연수원- 미국 NJC 공동 주최 온라인 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김선숙	"
	"	이누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문성	"
	"	박상구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연진	"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최운성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세용	"
	"	이금진	"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수원고등법원 판사	장지용	2025. 1. 22.부터 2025. 1.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사법연수원- 미국 NJC 공동 주최 온라인 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특허법원 판사	김기수	"
"	이지영	"

라.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남준우	2025. 1. 22.부터 2025. 1.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사법연수원- 미국 NJC 공동 주최 온라인 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	박주연	"
"	김혜성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마.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장윤미	2025. 1. 22.부터 2025. 1.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사법연수원- 미국 NJC 공동 주최 온라인 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바. 고등법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권보원	2025. 1. 22.부터 2025. 1.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사법연수원- 미국 NJC 공동 주최 온라인 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사.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경선	2025. 1. 22.부터 2025. 1. 23.까지 법관연수교육(2025년도 사법연수원- 미국 NJC 공동 주최 온라인 법관연수) 피교육을 명함
	"	오형석	"
	"	이창환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민아	"
	"	문지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지은희	"
	"	최승훈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관중	"
	"	김민수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한울	"
	"	박종웅	"
	"	이승엽	"
	"	이혜인	"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화정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황진영	"
	울산지방법원 판사	박세정	"

끝.

» 인사발령 법 제6호 | 2025. 1. 2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정용달	2025. 2. 10.부터 2025. 3. 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끝.

» 인사발령 법 제7호 | 2025. 1. 2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수정	판사에 연임함
	"	고승일	"
	"	김주옥	"
	"	김지선	"
	"	김형작	"
	"	류연중	"
	"	신영희	"
	"	엄 철	"
	"	이세라	"
	"	이의진	"
	"	이춘근	"
	"	이현경	"
	"	장창국	"
	"	정하정	"
	"	조은아	"
	"	조정래	"
	"	최진숙	"
	"	한대균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정기	판사에 연임함
	"	박정우	"
	"	정용신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준영	"
	"	나진이	"
	"	양상윤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원용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수희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서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박근정	"
	"	전기흥	"
	"	황보승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박옥희	"
	"	안복열	"
	"	최영은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곽경평	"
	"	김윤종	"
	"	윤정인	"
	"	이민영	"
	"	이상덕	"
	"	이수민	"
	"	이정원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지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태관	"
	"	김윤선	"
	"	박정호	"
	"	박평수	"
	"	양순주	"
	"	오연수	"
	"	이규영	"
	"	이준규	"
	"	이진관	"
	"	진세리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임혜원	판사에 연임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김수영	"
	"	이지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장수영	"
	"	최보원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노유경	"
	"	변지영	"
	"	이선희	"
	"	전서영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명희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석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이미정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현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유경	판사에 연임함
"	김재령	"
"	심영진	"
"	이양희	"
"	정문경	"
대전고등법원 판사	박은영	"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영현	"
(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고등법원 판사	조광국	"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의영	"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원철	"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2025. 2. 19.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8호 | 2025. 1. 22.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두희	2025. 2. 19.부터 2025. 6. 18.까지 사법연구 기간을 연장함. 끝.

» 인사발령 법 제9호 | 2025. 1. 23.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포함 (2025. 1. 31.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10호 | 2025. 1. 23.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정기승급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창근	17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강균	16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서범준	15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현정	13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강애란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이홍관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정은영	11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서정희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동복	14호봉을 급함
다. 고등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강호	10호봉을 급함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회기	16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철환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균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준승	14호봉을 급함
	"	최건호	"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봉재	"
	광주지방법원 판사	윤봉학	11호봉을 급함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범진	10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최승훈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김연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건협	8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강상우	"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아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차유나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정세영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우영식	"
	울산지방법원 판사	민한기	"
	"	신동욱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김도형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지상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종인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선호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가영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장준원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신예슬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안성규	"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부성	"
	창원지방법원 판사	홍대훈	"
	광주지방법원 판사	조혜정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원도연	"
	신입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김미리	"
	"	이원석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승현	6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세라	"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하림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윤서	5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유영	"
	신입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김유정 (金有貞)	4호봉을 급함
	"	김은영	"
	"	신주영	"
	"	유지희	"
	"	차현경	"

(2025. 2. 1.자) 끝.

》 인사발령 법 제11호 | 2025. 1. 24.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동휘	2025. 2. 24.부터 2025. 12. 23.까지 미국 샌디에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장원석	2025. 2. 24.부터 2025. 12. 23.까지 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서영	2025. 2. 24.부터 2025. 12. 23.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김경윤	2025. 2. 24.부터 2025. 12. 23.까지 미국 포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이화송	2025. 2. 24.부터 2025. 12. 23.까지 미국 UC어바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손성희	2025. 2. 24.부터 2025. 12. 23.까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전교	2025. 2. 24.부터 2025. 12. 23.까지 미국 UC어바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전고등법원 판사	송진호	2025. 2. 24.부터 2025. 12. 23.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다.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이승재	2025. 2. 28.부터 2025. 12. 23.까지 미국 샌디에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라.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재환	2025. 2. 24.부터 2025. 12. 23.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김신영	2025. 2. 24.부터 2025. 12. 23.까지 미국 포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정진화	2025. 2. 24.부터 2025. 12. 23.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마.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종현	2025. 2. 24.부터 2025. 12. 23.까지 미국 시라큐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신정민 (申貞旻)	2025. 2. 24.부터 2025. 12. 23.까지 미국 뉴햄프셔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광열	2025. 2. 24.부터 2025. 12. 23.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성겸	2025. 2. 24.부터 2025. 12. 23.까지 미국 페퍼다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홍수진	2025. 2. 24.부터 2025. 12. 23.까지 미국 워싱턴대학(세인트루이스) 교육파견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정현설	2025. 2. 24.부터 2025. 12. 23.까지 미국 예시바(카도조)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정현우	2025. 2. 24.부터 2025. 12. 23.까지 미국 산타클라라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권노을	2025. 2. 24.부터 2025. 12. 23.까지 캐나다 빅토리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옥희	2025. 2. 24.부터 2025. 12. 23.까지 미국 리치몬드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 인사발령 법 제12호 | 2025. 1. 3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영	2025. 2. 17.부터 2025. 2. 2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문현정	2025. 2. 19.부터 2026. 2. 18.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박신영	2025. 2. 15.부터 2025.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정하경	2025. 2. 15.부터 2026. 2. 14.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은경	2025. 2. 15.부터 2025. 5. 2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박기쁨	2025. 2. 15.부터 2026. 2. 1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재령	2025. 2. 17.부터 2025. 2. 2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다.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이성민	2025. 2. 19.부터 2025.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라.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은경	2025. 2. 15.부터 2025. 8. 14.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영순	2025. 2. 19.부터 2025. 5. 9.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마.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곽신재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2. 23.부터 2025. 3. 22.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유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2. 3.부터 2025. 2. 21.까지 휴직을 명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아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2. 3.부터 2025. 3. 4.까지 휴직을 명함
	광주가정법원 판사	민양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2. 2.부터 2026. 2. 1.까지 휴직을 명함
	신임법관연수 판사 (사법연수원)	이지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2. 6.부터 2025. 6. 5.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세이	2025. 2. 17.부터 2025.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김주현	2025. 2. 20.부터 2025. 9. 19.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노용준	2025. 2. 19.부터 2026. 2. 18.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방일수	2025. 2. 15.부터 2025.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유재경	2025. 2. 15.부터 2025. 7. 18.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이수경	2025. 2. 15.부터 2025.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서울행정법원 판사	송연정	2025. 2. 15.부터 2025.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노해준	2025. 2. 15.부터 2025. 2. 2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박설아	2025. 2. 15.부터 2026. 2. 27.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진경	2025. 2. 16.부터 2025. 2. 2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2025. 2. 19.부터 2025. 2. 2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김희주	2025. 2. 17.부터 2025. 2. 2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지원 (朴智元)	2025. 2. 17.부터 2026. 2. 16.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인천가정법원 판사	박성규	2025. 2. 18.부터 2025. 4. 30.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나현	2025. 2. 13.부터 2025. 8. 3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서현	2025. 2. 17.부터 2025. 2. 2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심우승	2025. 2. 15.부터 2025.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사해정	2025. 2. 22.부터 2026. 2. 20.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이종찬	2025. 2. 15.부터 2025.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홍진국	"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화연	2025. 2. 22.부터 2025. 7. 3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상이	2025. 2. 19.부터 2025. 8. 18.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청미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5. 2. 20. 자)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공성봉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5. 2. 15. 자)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수연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5. 2. 19. 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미진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5. 2. 22. 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신영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5. 2. 22. 자)
	"	박은주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5. 2. 22. 자)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현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5. 2. 17.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2. 17.부터 2025. 12. 21.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하성우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5. 2. 15. 자)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여태곤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5. 2. 15. 자)
	"	임정윤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5. 2. 22. 자)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주희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5. 2. 22. 자)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문수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22. 자)
다.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이성민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사법연수원 교수에 포함 (2025. 2. 22. 자)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정연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19.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세이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22. 자)
	"	김승현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15. 자)
	"	방일수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22. 자)
	"	이수경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22. 자)
	"	정연희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22. 자)
	서울가정법원 판사	강윤혜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19. 자)
	"	이예림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6. 자)
	서울행정법원 판사	송연정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22.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선임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22. 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영은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22. 자)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민경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17.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2. 17.부터 2025. 8. 31.까지 휴직을 명함
	"	김현준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21. 자)
	"	인자한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15. 자)
	"	황미정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22. 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유리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22.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윤준석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포함 (2025. 2. 19. 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양민주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포함 (2025. 2. 12. 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수민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포함 (2025. 2. 15.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2. 15.부터 2025. 8. 22.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은희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22. 자)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정양순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에 포함 (2025. 2. 22. 자)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에 포함 (2025. 2. 8.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 판사	손용도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15. 자)
	부산지방법원 판사	심우승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22. 자)
	"	차민우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21.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2. 21.부터 2026. 2. 20.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가정법원 판사	이민영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부산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19. 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박재인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포함 (2025. 2. 22. 자)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종찬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22. 자)
	"	홍진국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22. 자)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창환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17.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13호 | 2025. 1. 3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판사에 연임함
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혁중	판사에 연임함
	"	김종호	"
	"	남성민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규홍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전지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상훈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제정	"
(2025. 3. 1.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14호 | 2025. 1. 3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임 명(연 임)			
가.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김국현	판사에 연임함
	인천지방법원장	김귀옥	"
	부산가정법원장	박치봉	"
	제주지방법원장	김수일	"
나. 원로법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조경란	판사에 연임함
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평균	판사에 연임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혜영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현숙	판사에 연임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함종식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대	"
	"	김영학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수영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태경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광진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숙	"

라.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태현 판사에 연임함

(2025. 3. 1.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15호 | 2025. 1. 3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퇴 직			
가. 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장)	박형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고등법원장	윤 준	"
	부산고등법원장	김흥준	"

(2025. 2. 10. 자)

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승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 김경란 "
 " 심준보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한 "

(2025. 2. 24.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16호 | 2025. 1. 3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퇴 직			
가. 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최호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서울회생법원장	안병욱	"
	대구지방법원장	한재봉	"
	대구가정법원장	김형태	"
	부산지방법원장	박형준	"
	울산지방법원장	서경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5. 2. 10.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17호 | 2025. 1. 3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퇴 직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세종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	김영훈	"
	"	김용민	"
	"	김유경	"
	"	배상원	"
	"	조찬영	"
	"	하태한	"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형식	"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진웅	"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덕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동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	박동복	"
(2025. 2. 24.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18호 | 2025. 1. 3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에 포함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 포함
	"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에 포함
	특허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에 포함
	대전고등법원장	박종훈	부산고등법원장에 포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에 포함
	"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에 포함
	"	한규현	특허법원장에 포함
나. 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에 포함
	"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에 포함
	"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에 포함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에 포함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에 포함
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권기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수원고등법원장	이상주	"
	대구고등법원장	정용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라. 원로법관			
	광주고등법원장	배기열	원로법관을 지명함.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2. 겸 임			
가. 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2025. 2. 10.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19호 | 2025. 1. 3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준용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제정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상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 겸임해임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겸임을 면함
(2025. 2. 10.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20호 | 2025. 1. 3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포함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윤경아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포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윤상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 포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장에 포함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미연	청주지방법원장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에 포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양준	부산가정법원장에 포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진현	울산지방법원장에 포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훈	창원지방법원장에 포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승정	광주가정법원장에 포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에 포함.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김수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광주지방법원장	박병태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춘천지방법원장	부상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광주가정법원장	안동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청주지방법원장	임병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박형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부산가정법원장	박치봉	"
	창원지방법원장	이용균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의정부지방법원장	임성철	"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황정수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5. 2. 10.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21호 | 2025. 1. 3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원	고홍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포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상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포함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병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2. 겸임 및 겸임해임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수원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겸임을 면함

(2025. 2. 10.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22호 | 2025. 1. 3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	---------	----	------

1. 전 보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전고등법원 수석판사	이준명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에 포함
대전고등법원 판사	문봉길	대전고등법원 수석판사에 포함

(2025. 2. 10.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23호 | 2025. 1. 3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	---------	----	------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조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기현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광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양민호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성수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선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열 (李昌烈, 731217)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우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경수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평근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원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우정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부산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성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철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오권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에 포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성기권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영범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윤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최운성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영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신헌기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종수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장수영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석동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민성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성보기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5. 2. 10.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24호 | 2025. 1. 3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병희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사법연수원 교수	김동완	"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민지현	"
	"	원종찬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부산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광국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재신	"
	수원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김상우	"
	"	문주형	"
	"	민정석	"
	"	박해빈	"
	"	성충용	"
	"	원익선	"
	"	이상호	"
	"	이승철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성철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주영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윤종	"
	"	박정운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강종선	"
	대구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정승규	서울고등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특허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임영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심영진	서울고등법원 판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	이은혜	"
	서울회생법원 판사	남혜영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임현태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고진흥	대전고등법원 판사(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박규도	부산고등법원 판사(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정현식	광주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송오섭	광주고등법원 판사(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포함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현일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태웅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최종원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진우	"
	"	안재천	"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은희	특허법원 판사에 포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김성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	-----------------

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김승주	사법연수원 교수에 포함
대전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모성준	"

라.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강경표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포함
"	백숙중	"
"	최문수	"

(2025. 2. 24.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	---------	----	------

2. 휴 직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수원고등법원 판사

조효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5. 2. 24.부터
2026. 2. 20.까지 휴직을 명함

3. 복 직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재령

복직을 명함.
14호봉을 급함.
특허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24. 자)

4. 겸 임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제욱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장지용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교류추진단
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영욱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2025. 2. 24. 자)

5. 겸임해임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진석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5. 2. 10. 자)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권순민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제도연구심의관)	이재혁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제도연구심의관 겸임을 면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을 면함

(2025. 2. 24.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25호 | 2025. 1. 3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	---------	----	------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김현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	-----------------

(2025. 2. 10.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26호 | 2025. 1. 3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	---------	----	------

1. 지명해제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도현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판사 지명을 해제함
-------------------------	-----	--

(2025. 2. 10. 자) 끝.

» 인사발령 법 제27호 | 2025. 1. 3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임명			
가. 지방법원 판사			
		이종우	판사에 임함. 13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이환기	"
		임복규	"
		곽윤경	판사에 임함. 13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5. 2. 3. 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종우	2025. 2. 4.부터 2025. 2. 21.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	이환기	"
	"	임복규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곽윤경	"
끝.			

» 인사발령 법 제28호 | 2025. 1. 3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보임			
가.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정치언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포함 (2025. 2. 1. ~ 2026. 1. 31.). 끝.

» 인사발령 법 제29호 | 2025. 1. 3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임명			
가. 정무직			
		최진수	윤리감사관에 임함
(2025. 2. 10. 자) 끝.			



2025. 02. 15. 제 1706 호
Supreme Court of Korea

